

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. 7. 22 선고 2014가단3292 판결 [유류분반환청구로 인한
소유권이전등기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5. 7. 1.

판결 선고 2015. 7. 2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 중 각 1/6 지분에
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망 C은 2013. 11. 19.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,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. 11. 21. 접수 제16567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나. 망 C은 2014. 8. 2. 사망하였는데, 사망 당시 슬하에 딸들인 원고와 D, 아들인 피고가 있었고, 적극재산으로는 서울 서초구 E 외 3필지 지상에 위치한 F아파트 6동 1202호(이하 '이 사건 아파트'라 한다)가 있었으며, 소극재산으로는 망 C의 남서울농협에 대한 100,000,000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다.

다. 원고와 피고 및 D는 2014. 9. 24. 이 사건 아파트를 1,300,000,000원에 매도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에서 상속채무인 위 대출금 채무 100,000,000원을 변제하고, 나머지 1,200,000,000원의 1/3인 400,000,000원씩을 나누어 가졌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, 갑 제5호증,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피고는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여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유류분 상당인 1/6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1) 유류분반환대상인 재산의 범위 망 C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에게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망 C의 사망 당시인 2014. 8. 2. 기준 피고가 증여받은 가액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, 공시가격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2,145,94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,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유류분반환대상인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.

1	경북 의성군 G 임야 86,479㎡	2013. 11. 19.	23,435,809
2	경북 의성군 H 임야 74,182㎡	2013. 11. 19.	19,954,958
3	경북 의성군 I 임야 69,982㎡	2013. 11. 19.	18,755,176
합 계	62,145,943		

2) 유류분의 반환범위 가)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

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방법과 같다.

유류분 부족액 = {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(A)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(B)} -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(C) -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(D)

A = 적극적 상속재산 + 증여액 - 상속채무액

B =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/2

C =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+ 수유액

D =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- 상속채무 부담액

나)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(A)

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망 C의 상속개시시의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

1,300,000,000원과 증여재산의 가액 총 62,145,943원을 합한 1,362,145,943원에서 상속채무인 1,000,000,000원을 뺀 1,262,145,943원이다.

다) 원고의 유류분 비율 (B)

망 C의 직계비속인 원고의 법정상속분은 1/3이므로, 유류분 비율은 그 1/2인 1/6이 된다.

라)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(C)와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(D)

원고의 특별수익액은 없고,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여 받은 돈이 400,000,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순상속분액은 400,000,000원이다.

마) 유류분 부족액

따라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(= -189,642,343원(= 1,262,145,943 × 1/6 - 400,000,000원))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조영진

별지